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장애인복지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발달장애인법」 제29조의3 신설('22.6.10. 공포, '24.6.11. 시행)에 따라 추진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,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‘서비스 지원 종합조사’ 결과를 활용할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을 개정함

3. 주요내용

가.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사업에 ‘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’ 추가(안 제20조의3 제1항 5호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3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3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	제20조의3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
① 법 제32조의4제1항제4호에 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「 <u>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9조의 3제1항에 따른 최종증 발달장 애인 통합돌봄서비스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연 락 처	(044) 202 - 3348